

미신고·미연장 고정광고물(간판) 양성화 기간 안내

지금 **꼭** 자진 신고하세요!

☑️ **적법한 옥외고정광고물 요건을 갖췄으나, 허가 또는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 된 고정광고물(간판)이 있다면 신청하세요. 아래기간에 신청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**

 신청기간 **2022.1.3.~ 4.29.** (4개월간)

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


①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(신고)를 받지 않은 간판

-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·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
-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(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) 1부
- 설명서 및 설계도서(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) 각 1부
- 광고물 설치 승낙서(토지 및 건물 본인소유 아닌 경우)

②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미연장 허가(신고) 간판

-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 허가 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
- 광고물 원색사진 및 위치도(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) 1부
- 광고물 설치 승낙서(토지 및 건물 본인소유 아닌 경우)

 신청접수 전주시양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☎ 완산구(220-5550), 덕진구(270-6455)

 유의사항 양성화는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하며,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.

★ 양성화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,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.

